

연구용역보고서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

2003. 10

한국개발연구원

# 제 출 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금융감독위원회가 의뢰한 2003년도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능력 제고 관련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0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중 수

< 연 구 진 >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

KDI 연구진 : 신 인 석 연구위원(연구총괄)

김 정 연 연구원

임 찬 순 연구행정원

외부연구진 이 군 희 교수 (서강대)

# 목 차

I. 서론 : 배경과 정책방향	
1. 배경	
가. 신용불량자 증가원인에 대한 인식 .....	1
나. 정책과제의 제기 .....	2
2. T/F의 논의대상 및 방법 .....	4
II.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 개선	
1. 현행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평가	
가. 현행 체제의 개요 .....	5
나. 평가 .....	8
2. 개선방안	
가. 목표 .....	14
나. 기본 방향 .....	14
다. 세부 방안 .....	22
III.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1. 현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	
가. 모범적 시스템의 개요 .....	33
나. 현행 시스템의 평가 .....	37
2.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	51
나. 세부방안 .....	52
부록 1 바람직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	58
부록 2 BASEL II 협약 개요 .....	63

# I. 서론: 배경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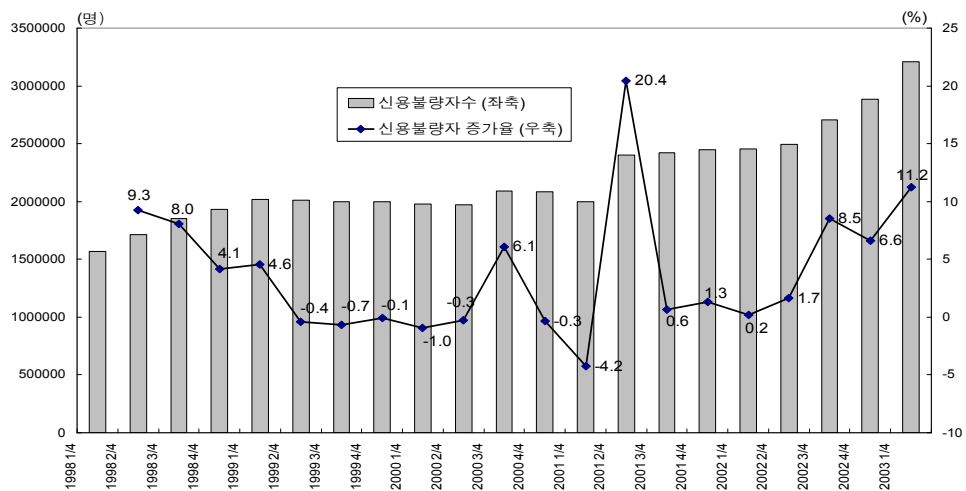
## 1. 배경

### 가. 신용불량자 증가원인에 대한 인식

□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규모의 추이는 세 국면을 거치며 증가

- (제 1국면: 98~99년 증가기) 경제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와 경제의 구조변화로 신용불량자가 150~160만명 수준에서 220~2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시기
- (제 2국면: 00~02년 안정기) 신용불량자 규모가 220~240만명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던 시기
- (제 3국면: 02년~현재 증가기) 신용불량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5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시기

[도] 신용불량자 추이: 98.3~03.6



\* 최근 신용불량자(천명): (02.3) 2,455 → (02.6) 2,259 → (02.9) 2,455  
 → (02.12) 2,635 → (03.3) 2,956 → (03.6) 3,225 → (03.9) 3,502

- 제 1국면의 신용불량자 증가는 경제위기로 촉발된 고용구조의 변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증가였다고 평가됨.
  -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98~99년의 기간에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청년실업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소득변동위험과 신용위험 증대를 야기
  - 그 결과 같은 기간 신용불량자 규모가 150만명 내외에서 220~240만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
  - 특히 99년 이후 거시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규모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최소한 220~2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
- 반면 최근인 02년 이후의 신용불량자 증가는 신용카드 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위험관리 미흡에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최근의 신용불량자는 20대·소액·신용카드 관련 연체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98~99년의 증가와는 다른 양상
  - 이 같은 양상의 신용불량자 급증은 신용카드 회사가 00·01년 기간에 위험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카드거래자와 현금대출을 급속히 증가시킨 데 주로 기인

#### 나. 정책과제의 제기

- 이 같은 신용불량자 증가원인에 대한 평가는 신용불량자 증가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 첫째, 금융정책 측면에서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관리 기능을 제고할 필요
    - \* 최근 1년간의 신용불량자 급증은 신용카드 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 미흡에 주로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

○ 둘째,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 측면에서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의 증가 이전인 02년 상반기에 이미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규모는 240만명 내외에 달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

\* 02년 이전의 신용불량자는 주로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기인하여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청년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를 반영한 결과임을 시사

\*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현상에 대한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신용불량자 대책차원에서도 요구됨을 인식할 필요

○ 두 가지 과제 중 이 보고서는 금융정책 과제인 첫 번째 정책과제에 대한 방안마련에 목적이 있음.

□ 특히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관리 기능 제고는 경제위기 이후 은행 등의 자산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

○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자산은 대기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

○ 이 같은 대출자산 구성의 변화는 향후에 있어서도 가계와 중소기업이 은행 및 대출영업을 영위하는 기타 금융회사의 주된 고객층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장기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관리 기능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2. T/F의 논의대상 및 방법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①개인신용정보 유통 체제의 개선 ②금융회사의 위험관리 행태 개선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두 주제별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각 주제별로 '현황 평가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모색'의 형식으로 연구를 구성
- 정책방안은 정책당국, 전문가, 업계관계자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거쳐 도출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도출, 문제점에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서의 쟁점 도출은 물론 쟁점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정책당국, 전문가, 업계관계자의 공동 참여에 의하여 진행



## Ⅱ.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 개선

### 1. 현행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평가

#### 가. 현행 체제의 개요

##### 1) 연혁

-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유통체제는 55년 감독당국에 의해 시작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은행연합회로 이관되어 발전
  -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의 수집과 유통업무는 55년 감독당국에 의하여 시작되었음.
    - \* 55년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정리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며 연체정보 수집업무를 시작
  - 이후 금융발전과 함께 82년 동업무는 감독당국에서 은행연합회로 이관
    - \* 82년 '금융기관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업무가 은행감독원에서 은행협회로 이관
- 95년 관련법 제정과 함께 은행연합회는 불량정보(negative information) 등의 수집·유통, 민간 신용조회회사는 기타 정보의 수집·유통 및 정보의 가공기능을 담당하는 현재 체제가 형성
  - 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제정되며 주로 신용정보의 가공에 종사하는 '신용조회업'과 불량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념이 신설
    - \* '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의 가공뿐 아니라 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집중되는 정보를 제외한 기타 신용정보의 수집업무도 수행 가능

- \* 신용정보법 제2조 제8호는 ‘신용조회업’의 개념을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동법 제2조 제12호는 “처리”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용어 정의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는 은행연합회가 지정되며 종래 수행하여 온 신용정보집중기능을 계속하여 담당
  - \* 단, 97년 법률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분되며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재등록
- 신용조회업은 민간기업에 개방되어 현재 한신평정, 한신정, 한기평, 신보, 기신보, 서신평 등 6개사가 금감위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
  - \* 개인신용평가업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한신정 및 한신평정이 CB(Credit Bureau)업의 일환으로 02년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현재 도입 초기단계의 수준에 있음
    - 한신정: 02.11월 서비스 개시, 한신평정: 02.5월 서비스 개시

## 2) 특징

- 현재 우리나라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는 사실상의 ‘공적신용정보 유통기구(Public Credit Registry)’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민간기업에 의한 ‘신용조회업’의 역사가 일천함에 따라 현재 사

실상 수집·유통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집중되고 있는 불량정보와 대출잔액 정보가 주축을 이루어 왔음

- 은행연합회는 비영리 민간기구이며 따라서 은행연합회를 통한 정보의 집중·유통은 일부 유럽국가의 중앙은행 등 명실상부한 공적 기구에 의한 정보의 집중 및 유통과는 외형상 차이
-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 세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은행연합회의 정보 집중·유통은 실질적으로는 ‘공적기구’에 의한 업무수행과 거의 유사한 상황

□ 현행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관련된 규제는 크게 ① 강제정보집중 규제 ②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③ 업무방식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음.

① **강제정보집중 규제:** 모든 금융회사는 정해진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금융회사가 정보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규에 의해 부여되고 있음.

② **소유지배구조 규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비영리 단체일 것이 요구되며, 지배구조로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할 것이 법규에 의해 요구됨.

③ **업무방식에 대한 규제:**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교환대상자가 법규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등록, 관리, 변경 등의 세부 업무방식이 모두 법규에서 정해짐.

\* 법과 시행령은 감독당국에 집중기관의 업무방식을 재량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 (법 18조, 시행령 10조)

\* 이에 따라 등록시점, 집중정보의 보존기간 등은 직접 감독규정에서 규율. 집중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은 신용정보협회가 정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가능.

<표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관련 현행 규제

분 류	내 용
강제 정보집중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금융회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해진 신용정보 제공의무 (법 17조 2항, 시행령 9조 6항, 감독규정 11조)</li> <li>-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가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법 17조 5항)</li> </ul>
소유 지배 구조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 단체 (법 17조 3항)</li> <li>- 집중기관의 운영기구로서 신용정보협회를 설치 (법 17조의 2)</li> </ul>
업무 방식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 범위 규제 (시행령 9조 5항)</li> <li>- 정보교환대상자 규제 (법 17조 4항, 시행령 9조 9항)</li> <li>- 신용정보 등록·변경·관리 방법 규제 (법 18조, 시행령 10조, 감독규정 11조)</li> </ul>

## 나. 평가

### 1)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이론적 유형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는 정보집중기구의 소유지배구조 상의 특성에 따라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음.

- 신용정보유통체제는 정보의 수집·집중과 가공 등 두 단계로 구성되며,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정보집중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의 성격이 전체 유통체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정보집중기구의 성격은 해당 기구의 소유지배구조에 의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정보집중기구의 소유지배구조가 신용정보 유통체제의 유형을 결정

□ 정보집중기구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①공적기구형 ②클럽형(조합형) ③일반회사형 등의 세 가지 유형 구분이 가능

### 공적기구형

□ 중앙은행, 감독당국 등 공적기구로 신용정보가 집중되고 집중된 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에게 제공되는 유형

- **기본특성:** 공적기구로의 정보집중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적기구에 의한 강제정보집중·유통이 존재함에 따라 민간에 의한 신용정보 유통은 상대적으로 미발달하는 경향을 보임.

\* 공적기구와 민간기업에 의한 신용정보유통은 상호 대체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존재

- **사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대륙국가가 이 유형에 해당하며 중앙은행 등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집중기구 역할을 담당

- **장점:** 일정한 범위의 정보집중과 유통이 안정적으로 보장됨.

- **단점:** 공적기구의 일반적 단점인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동태적인 비효율성(환경변화에 대응한 진화능력, 혁신능력)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정보집중기구의 운영체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공적기구의 잠재적인 단점

## 클럽형

□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율조직인 클럽형식으로 집중기구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유형

○ **기본특성:** 금융회사들이 회원제 형식의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규약에 의하여 정보를 집중하고 공유하는 형태이며 운영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니라 정보집중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 '클럽(Club)'은 생산물의 소비자가 직접 경영을 지배하는,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조직체를 지칭하는 개념.

○ **사례:** 벨기에가 유사한 예에 해당하며 금융회사 협회 (Professional Union of Credit Providers)에 의해 운영되는 정보집중기관이 존재

\* 벨기에의 경우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기구도 존재. 그러나 금융회사 협회에 의한 정보집중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장점:** 공적기구의 비효율성과 일반회사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적독점에 기인한 폐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

○ **단점:** 금융회사 사이에 동질성이 약할 경우 합의도출이 곤란하고 따라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회원제 형식의 클럽 조직은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론적 연구가 존재

\* 예컨대 최근 선진국 증권거래소가 과거의 클럽조직(회원제 조직)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회원간 동질성의 상실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일반회사형

-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에 의하여 신용정보가 집중되고 유통되는 유형
  - **기본특성:**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이 시장에서의 거래형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수집·집중하고 유통시키는 형태
  - **사례:** 미국, 영국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국가의 경우 공적기구 또는 클럽형 조직의 역할은 없고 소수의 일반회사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집중·유통되고 있음.
  - **장점:** 신용정보유통이 시장자율이 극대화된 산업구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혁신 등 효율성이 우월할 수 있음.
  - **단점:**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체제유지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산업구조가 독과점으로 진전되며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

## 2) 현행 우리나라 체제의 평가

-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는 외형은 클럽형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적기구형에 해당
  - 현재 강제정보집중기구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비영리기관이고 지배기구인 신용정보협의회는 신용정보 제공자이자 이용자인 금융회사들로 구성되므로 외형상은 ‘클럽’조직에 해당
  - 그러나 강제집중규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업무방식 규제 등 법에 의해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모두 정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적기관형에 해당

- \* 모든 금융회사가 법에 의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강제로 정해진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실질적으로는 공적기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3) 현행 우리나라 체제의 문제점

- 현행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는 ①강제정보집중기관 정체성의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점과 ②공적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신용정보 유통체제 변경 위험 문제점 등을 보이고 있음.
- 첫째, 강제정보집중기관의 외형과 실질의 불일치에 따른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민간신용정보업의 발전이 지체
  - 강제정보집중기관이 외형상 민간기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기구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업무영역 확장의 유인과 가능성이 있음.
  - 강제정보집중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가능성 존재는 민간신용정보업의 장기 경쟁환경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여 장기비전에 입각한 투자와 영업활동이 전개되지 못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둘째, 공적기구형의 집중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신용정보 유통체제 변경 위험이 실재하고 있음.
  - 신용불량자 증가라는 경제적 현상이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하여 비경제적 논리에 의한 정책대응이 강요될 위험이 존재
  - 이로 인해 비경제적 요인으로 집중되는 신용정보범위가 변경되고 정보자료가 손상(신용불량정보 사후관리기록 일괄삭제, 신용불량등록기준 상향조정 등)되는 등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가 왜곡될 위험이 실재



- 이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유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양과 질의 개선이 정체된 상황
  - 민간신용정보업의 발전이 지체된 가운데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집중기능도 정치적 위협에 노출되어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
  -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용정보범위의 확대, 각종 개인신용위험평가 모형을 이용한 가공된 신용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현재 불량정보 위주의 유통신용정보 범위가 우량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가공도 지연
  - 그러한 가운데 금융회사는 신용불량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여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
- 이 이외에 개인신용정보 유통의 양과 질의 정체를 초래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민간신용정보업의 역사가 일천함에 따라 전반적인 민간CB(신용조회사)의 활동이 미약한 점이 있음.
  - 신용조회업자의 정보축적 및 정보가공역사가 일천함에 따라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조회회사를 이용할 유인이 부족한 상태
    - \* 즉 신용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신용정보의 질과 양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
  - 그러한 가운데 5개 대형 신용카드사는 자율적인 단기연체정보 교환망을 구축하고 신용정보를 공유
    - \* 신용정보법 제 27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2. 개선방안

### 가. 목표

####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기능 확대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를 통하여 유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가 우량정보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를 통하여 가공된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 □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의 안정성 제고

-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가 변경될 위험을 축소

### 나. 기본 방향

- ◇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 체제 지향
- ◇ 강제정보집중기구의 정체성 정립
- ◇ 강제정보집중범위의 안정성 제고 (변동 가능성 제거)
- ◇ 민간신용정보업자(CB)의 성장기반 조성
- ◇ 개인신용정보 보호 상의 부작용 방지

## 1) 가능한 대안

□ 현행 체제의 개편대안에는 공적기구형 정보집중기관의 유지 여부에 따라 ①공적기구 전담체제 ②민간기구 전담체제 ③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 등의 세 가지 부류가 존재

- 공적기구 전담체제: 현재 강제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적기관이 신용정보의 집중을 전담하는 방안
- 민간기구 전담체제: 공적기구로의 강제정보집중을 전면 철폐하고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정보집중과 유통에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안
-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 공적기구로의 강제정보집중을 일정 범위에서 운영하고 동시에 민간기구의 자율적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

## 2) 대안별 검토

### 공적기구 전담체제

□ 현재 강제정보집중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강제집중되는 정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유통되는 신용정보 범위의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 방향

- 강제정보집중기구로 강제집중되는 정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여 유통되는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
- 즉 집중대상 연체정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우량정보도 강제집중대상으로 지정

<표 2> 공적(강제)정보집중기관의 역할: 유럽 사례

국 가	금융회사 범위	최소금액 조건(\$us)	정보내역
오스트리아	은행 보험회사	430,700	총여신, 보증
벨기에	은행	(개인) 223 (기업)27,950	(개인) 연체정보, 총 여신 (기업) 연체정보
프랑스	은행	118,293	(개인) 연체정보 (기업) 총여신, 보증
독일	은행 보험회사	1,699,800	총여신, 보증
이태리	은행	(부실채권) 0 (그 이외) 86,010	연체정보, 총여신, 보증
포르투갈	은행 신용카드 회사	5	연체정보, 보증
스페인	은행	6,720	연체정보, 총여신, 보증
핀란드	불확실	0	연체정보

자료: Tullio Jappelli and Marco Pagano, "Public Credit Information: A European Perspective," in *Credit Reporting Systems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 **평가:** 집중·유통되는 정보범위 확대는 달성할 수 있으나 과도한 공적개입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 위험에 노출
  - 공적기구에 의한 강제정보집중이 존재하는 유럽국가의 예를 볼 때 강제정보집중의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해서도 협소 (표 2 참조)

- \* 강제정보집중제도가 존재하는 모든 유럽 국가에서 집중기구는 중앙은행 또는 감독기관이며 강제정보집중이 감독목적에 따른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임.
- \* 이에 따라 제공자가 은행 등으로 한정 (신용카드 회사 등 배제)되어 있거나 집중정보가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자 관련정보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므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정보와 우량정보를 대상으로 강제정보집중을 실시할 경우 국제적인 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공적개입

### 민간기구 전담체제

- 현재의 강제정보집중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과 유통이 클럽형 또는 일반기업형의 기관에 의하여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방향
  - 강제정보집중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규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자율협약에 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유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환경 개편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실질적인 민간기구로 전환되는 방안
  - 동시에 CB로 통칭되는 민간신용조회회사에 의한 신용정보집중·유통 기능의 성장도 가능한 법환경을 마련하는 방안
- **평가:** 강제정보집중기구의 정체성 혼란 해소, 공적기구의 문제점 해결, 금융회사간 동질성 상실에 따른 협조실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최선의 방안이나 수반되는 위험이 존재
  - 민간체제로 완전 이행함으로써 강제정보집중기구 정체성 혼란이

해소됨과 동시에 공적기구가 지니는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 및 환경대응능력의 미흡 등을 최소화 수 있는 방안

- 금융회사간 동질성 상실로 자율협조가 곤란할 경우 클럽형 조직의 민간기구는 부적절할 것이나 일반회사형의 민간기구가 등장할 경우 영리 유인에 기인한 시장거래에 의해 문제해소 가능
- 그러나 ①클럽형의 민간 정보집중기구가 원활히 발전하지 못할 경우 신용정보의 집중과 유통에 일시적 단절이 야기되는 문제점 ②일반회사형 위주로 성장할 경우 사적독과점에 따른 폐해 가능성 등이 위험요인

□ **추가 논의:** 역사적 전제를 감안할 때 두 가지 위험요인 중 특히 ‘일시적인 신용정보의 집중과 유통 단절 위험’이 실재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은행연합회가 강제정보집중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량정보 등을 집중하여 유통하고 있음.
- 그러므로 민간체제로의 완전이행을 추진할 때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현재 은행연합회 기능이 자율협약에 기반을 둔 클럽형의 체제로 순조로이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즉 외형상 클럽형인 현 체제가 실질적인 클럽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가 과제
  - \* 은행연합회 기능이 클럽형 체제로 계속하여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은행연합회의 기능을 대체한다 하여도 당분간 정보량이 크게 축소될 위험
- 그러나 현재 금융회사의 동질성이 크게 약화된 상태로서 클럽형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은행연합회 기능이 자율적으로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 전국적 금융회사와 지역 금융회사 등등 간에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률적인 강제정보집중 범위 확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됨.

###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

□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을 전제로 하면서 ①강제정보집중기구의 공적기구로서의 정체성 정립 ②민간기구의 성장기반 확충 등으로 현존 문제점 해소를 추구하는 방안

- 즉 강제정보집중기구는 공적기구로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 집중과 유통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는 민간의 자율적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

- 이를 위하여 공적규제에 근거한 강제정보집중기능은 유지하되, 강제정보집중기구는 공적 기능의 수행자임을 분명히 하여 정체성 혼란을 해소

\*강제정보집중기구의 공적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법적 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현존체제의 ‘외형상은 클럽형, 실질적으로는 공적기구형’이라는 혼란을 해소

- 동시에 민간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경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정보 유통 활성화 유도

\*공적기구에 의한 정보집중기능의 존재가 시장자율의 정보집중유통을 저해하는 경쟁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명한 장기 경쟁환경을 제공하여 민간신용조회회사의 자율적 발전을 유도

□ **평가:** 역사적 전제를 존중하면서 현존 문제점 해소를 추구함으로써

이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완전한 민간체제의 잠재적 위험요인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 강제정보집중제도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유통체제가 발전하여 온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제를 존중함으로써 급격한 체제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 즉 강제정보집중제도에 근거한 공적기구의 역할을 유지하여 신용정보 유통의 안정성은 확보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 정보의 유통과 가공은 시장자율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동시에 공적기구의 존재로 민간기구에 대하여 잠재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보유통시장이 ‘경쟁적 시장(Contestable Market)’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

□ **추가 논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①공적기구에 의한 강제정보집중 범위의 명확한 재정립 ②민간신용조회업의 기타 경쟁환경 왜곡요인 제거 ③개인신용정보 보호 상의 부작용 방지 등이 필요

-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강제정보집중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고 정립된 집중범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강제정보집중범위는 ①공적기구의 경제적 기능 확립 ②민간신용조회사의 업무범위 확정 등의 두 가지 효과가 있음.

\*즉 강제정보집중범위의 확정과 정해진 범위의 안정성 유지는 공적기구의 정체성 확인과 민간신용조회의 경쟁환경에 있어 모두 중요한 요인

\*또한 강제정보집중범위의 제도적인 안정성 제고(변동 가능성 축소)는 개인신용정보 유통체제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을 위



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필요

- 민간신용조회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구와의 관계 이외의 측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경쟁환경 왜곡요인을 찾아내어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

\*경쟁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노력이 필요

\*또한 현재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사실상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정보의 집중과 공유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 방안 검토도 필요

- 마지막으로 개인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상의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

\*특히 불필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신용불량자’ 제도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민간신용조회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 3) 종합 의견

-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공적기구·민간기구 공존체제’를 전제로 하면서 현존 문제점의 해소를 지향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되며, 이에 맞추어 다음의 주제별로 세부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첫째, 종합정보집중기구의 공적기구로서의 정체성 정립
- 둘째, 종합정보집중범위의 명확한 정립과 안정성 제고
- 셋째, 민간신용조회업의 성장기반 조성

- 넷째, 개인신용정보 보호 상의 부작용 방지

#### 다. 세부 방안

##### 1) 종합정보집중기구의 공적기구로서의 정체성 정립

###### 종합정보집중의 경제적 의의

- 법에 의한 종합정보집중의 경제적 의의를 개인신용정보유통에 있어서의 시장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있는 것으로 정립
  - 시장자율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는 기능은 공적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을 필요
  - 이에 따라 종합정보집중은 개인신용정보유통을 공적 개입에 의하여 전담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아니며 시장자율의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안전장치로 그 의의를 정리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위상 정리: 공적기능 위탁수행자

- 현재 강제정보집중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적기능의 위탁수행자의 자격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
  - 강제정보집중은 유럽 국가의 예에서와 같이 감독당국이 직접 담당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에의 업무위탁도 개념적으로 가능
  - 특히 우리의 경우 외부기관인 은행연합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여 온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제를 감안할 때 외부기관에의 위탁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
- 이에 따라 법규를 개선하여 현존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종합신

용정보집중기관의 기능과 정체성의 혼란을 해소

- 현행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법상 규정에는 민간기구를 전제한 규제와 공적기구적인 규제가 혼합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
-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안에 유의하여 법규를 개정
  -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적규제에 근거한 기관임을 명확히 규정
  - ② ‘자율신용정보집중기관’은 현재와 같이 ‘등록제’에 의하여 진입을 규제
    - \*민간자율기구이므로 등록제 규제를 적용
  -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기능수행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법규를 개정

### 종합정보집중기구의 업무범위 제한

- 종합정보집중기구는 공적기능의 수행자이므로 위탁된 기능이외의 신용정보관련업무의 수행은 제한
  - 공적기구가 민간기업과 경쟁에 임할 경우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한계

### 공적기구로서의 권한과 기능은 확충

- 종합정보집중기구는 법규에 의한 공적기능의 위탁수행자이므로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요구되는 권한은 강화
- 첫째, 신용조회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정보가 되고 있는 은행연합

회 집중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연 및 누락사태에 대한 제재금을 현재보다 2배로 상향조정

- 신용정보 지연 및 누락건에 대한 제재금은 현재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법 제17조의2 제2호에 의거 제정한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표 3> 지연 및 누락 기간별 제재금 부과기준**

구 분	부과기준	제재금
-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의 지연 또는 누락	30일 이내	2만원
	90일 이내	4만원
	180일 이내	6만원
	180일 초과	8만원
- 개인대출정보 등록의 지연 또는 누락 등	30일 이내	2만원
	90일 이내	4만원
	180일 이내	6만원
	180일 초과	8만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금융회사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 점검기능 강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의 이행실태 조사후 금융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요구

□ 또한 공적정보집중기구의 역할 수행이 보다 적합한 공공기록정보의 수집은 종합정보집중기구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능을 확충

-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의하여 수집이 필요한 공공기록정보의 수

집은 종합정보집중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납세정보, 국민연금관련 정보 등 공공기록정보 수집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 2) 종합정보집중범위의 명확한 정립 및 안정성 제고

### 종합정보집중범위의 명확한 정립

□ 종합정보집중범위는 역사적 전제를 존중하여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명확히 정립

- 법에 의해 의무집중되는 정보범위는 유럽 국가 등 국제적인 사례 및 이론적으로 볼 때 현재 수준보다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공적기구로 의무집중되는 정보범위는 안정적인 정보집중이 국민경제적으로 요구되는 범위이어야 하며, 이는 이론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필요에 요구되는 정보범위라고 보아야 함.

\*<표 2>에서 보듯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의 종합정보집중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이를 반영

- 그러나 제도의 최초 설계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의 종합정보집중범위를 유지

\* 집중대상 정보범위 축소시 민간신용조회업이 현재의 강제정보집중기구 역할을 대체할 시점까지 중단기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량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

### 종합정보집중범위의 안정성 제고 (변동 가능성 축소)

- 의무집중되는 정보범위의 변동 가능성을 축소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에서 종합정보 집중범위를 규정
  - 현재 의무집중되는 정보범위는 법의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협의회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자율과 공적형식의 혼합
  - 법에서 정보범위를 규정하도록 하여 의무집중되는 정보범위의 안정성을 제고
    - \*의무집중 정보범위의 가변성 문제는 종합정보집중기관의 정체성과 민간신용정보업의 경쟁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해소될 필요

### 3) 민간개인신용정보업자(CB)의 성장기반 조성

#### 장기경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 이상의 종합정보집중기구의 정체성 정립과 의무집중되는 정보범위의 안정성 제고는 민간신용정보업자의 장기경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효과
  - 공적기구(종합정보집중기구)와 민간기구의 업무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장기경쟁환경의 불확실성이 제거

#### CB업의 법적 근거 명시

- 현재 법규상에는 개인신용정보의 분석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CB업을 명시적으로 포괄하는 법적 개념이 결여

- 'CB(Credit Bureau)' 또는 'CRA(Credit Registry Agency)'는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자체적인 방법에 의거 분석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기능수행자를 지칭
-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업에 대한 법의 규정은 이 같은 기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재 CB업자는 “신용조회업무” 허가를 받아 암묵적으로 CB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

<표 4> CB업무의 종류와 내용

업무종류	업 무 내 용
신용평점(Credit Score)	소비자 신용평점 산정 및 제공
조기경보(Early Watch)	소비자 신용정보 변동시 조기 대처토록 변동사항 통보
사기방지(Fraud Prevention)	거래신청관련 사기방지 서비스 제공
사전검증(Prescreening)	신용거래 거절 대상자 리스트 제공 및 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인사업무를 위한 대상자 점검
의사결정지원(Decisioning Solutions)	신용거래 결정에 필요한 정보처리 및 데이터 제공
데이터분석(Data Analytical Service)	데이터 비교분석 보고서 제공

- CB업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을 명시하여 CB업의 공정경쟁 환경 및 금융소비자 보호환경이 건전하게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현재의 “신용조회업무”에 대한 법 규정을 수정하여 신용정보의 분석·평가가 업무의 일부임을 명시

\*현행 규정: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처리하거나 이를 토대로 타인의 신용상태에 대해 분석·판단한 결과를 조회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경쟁제약요인 제거

- 신용정보업 관련 수수료 한도제를 폐지하여 시장자율의 서비스 개발을 유도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신용조사, 신용조회)에 대한 법정수수료 한도제를 폐지

\*현행 법정수수료 한도: 신용조사 - 건당 30만원, 신용조회 - 단말기 월 200만원/건당 3,000원

- 법정수수료 한도제의 폐지로 차별적인 서비스 개발을 유도

- 법에 의하여 허가받지 않은 유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 회사의 활동을 배제하는 방안 검토

- 현재 5개 신용카드회사간 연체정보의 정기적인 집중과 교환은 본질상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하나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의 존재에 기인

\*관련법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업무와 관련하여 얻어지거



나 만들어낸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조)

\*동조항의 내용은 입법의도상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신용정보의 수집과 교환’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유사 기능이 출현

- 그러므로 ‘어떤 형식으로도 정기적으로 신용정보를 수집, 교환,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쟁환경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

####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신용정보 유통·활용 유인 제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지 개인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신용정보(다른 금융회사와의 과거 신용거래실적, 연체상황 등)의 수집·활용정도를 중점 반영

- 특히 가계대출(신용카드 신용공여 포함)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의 대손충당금 적립지도와 연계를 대폭 강화
- 즉 평가결과가 불량하게 나타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정상”분류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이에 상응하게 상향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다양한 우량신용정보 활용 유인을 제공

\* 은행의 경우 현재 정상분류여신의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총여신의 0.75%

#### 4) 개인신용정보 보호상의 부작용 방지

##### 동의철회권 신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이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이를 철회

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재 법규에는 개인이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해 일단 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이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자유로이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유의

### 개인신용정보 제공내역 통보 요구권 신설

- 신용정보주체가 일단 신용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조사 요구권 신설

- 현행 법규에는 신용정보업자 등이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법 제27조)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미흡
  -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오·남용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업자 등의 정보 오·남용여부를 조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의 조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

### CB업자의 내부통제 감시장치 마련

- CB업자의 내부통제현황을 감독당국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 신용조회업자(CB업자)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내부관리규정 제·개정시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보고의무를 신설

### 이동통신요금관련 신용불량 등록체계 개선

- 요금연체가 신용불량 등록으로 연결됨을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의무화
    - 단말기 할부금·통신료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의무화
- \*2003년 8월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하여 등록된 신용불량자 수는 약 571천명

### 신용불량자 제도 개편 검토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신용정보유통의 효율성에 대한 기여는 없는 가운데 불필요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 법상 ‘신용불량’ 개념을 실질적 개념인 ‘금융채무연체’, ‘금융질서 문란’으로 대체
  - ‘신용불량자’가 법적으로 공인된 개인에 대한 최종적인 신용평가 결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관행의 불식을 유도

\*민간CB업의 성장으로 ‘①연체정보만이 아니라 우량정보 등을 종합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에 기초를 두면서 ②체계적인 신용평가기법과 모형에 근거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결정이 행해지는 체제로 전환을 추구

□ 단, 제도 개편은 시장여건을 감안하며 중기적으로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을 방지

○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논의 자체가 단기적으로 도덕적 해이 심리를 악화시키고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증가시킬 우려 존재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또는 변경논의가 개인의 채무상환의무 이행 미비에 대한 시장자율의 정상적인 규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분위기가 한편에 존재

\*이러한 정치사회적 위험요인이 축소되는 것에 맞추어 신용불량자 제도 변경과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

○ 그러므로 CB와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축적과 가공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신용위험 평가 능력의 확충, 금융거래자 및 사회전체의 신용 및 신용정보 중요성 인식 등이 전제될 필요

### Ⅲ.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1. 현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

##### 가. 모범적 시스템의 개요

##### 1) 의의

- 금융회사의 신용위험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및 금융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 초래
  - 금융회사의 합리적인 신용배분 과정은 내·외부적으로 축적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능력을 올바르게 측정하여 신용의사결정을 내리는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의미
  - 효율적인 신용배분에 실패한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리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충격 및 외부효과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금융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 잠재
-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축소되고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함께 발전되지 못함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손실가능성이 커짐
  - 경기변동 사이클에 따라 소비자신용이 급속히 팽창하고 빠르게 수축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부실화 우려가 커짐
  - 선진화된 개인신용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카드거래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
- 따라서 소비자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불량자의 추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

## 2) 바람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운영

□ 선진화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크게 다음의 4단계로 구성

### (1단계) 개인신용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국내외 경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주요내용: 적정한 내부자기자본 유지 전략 설정, 경기변동 사이클 분석 및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위급상황 계획서 작성, 리스크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 (2단계) 구체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세부 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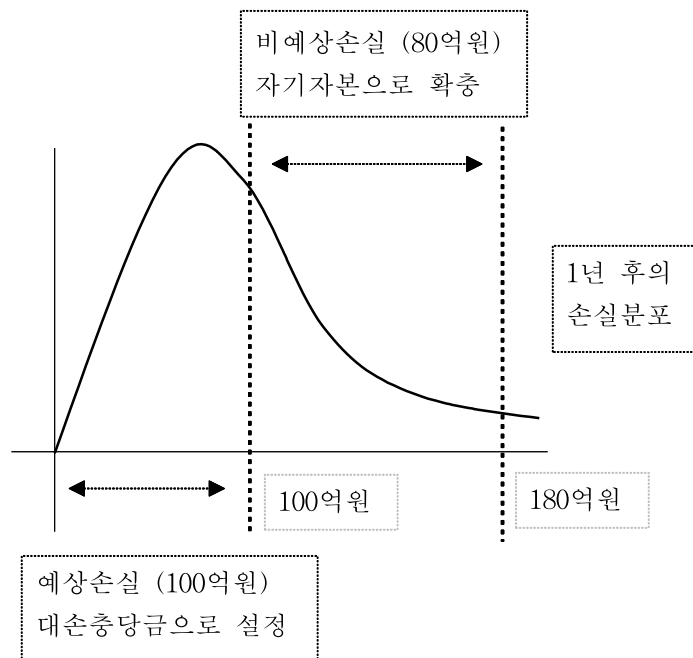
- 사전에 설정된 신용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기준으로, 리스크별 상품기획 및 운영, 이자율 및 한도기준 설정, 기타 신용손실 대비방안 등 리스크관리 세부 전략을 수립
- 주요내용: 리스크 특성과 영업환경 일치여부 점검,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보고체계 설정, 내부통제를 위한 점검 및 감사체계 설정

### (3단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리스크 관리

-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결과를 이용하여 신용공여에 대한 승인/거절, 신용손실에 따른 이자율 설정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및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관리

- 주요내용(개인신용평가시스템): 사전 거절자 확인, 블랙 리스트 확인, 신청인의 금융정보 확인, 신용평점 산출, 이자율 및 한도 산정,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1년 후에 발생할 손실분포 추정
- 주요내용(리스크관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나타난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동일한 리스크 특성을 갖는 내부등급체계 구성, 동일한 내부등급체계의 1년 후에 발생할 손실분포에 따라 예상손실과 상위 1%에 해당하는 비예상손실 금액을 산출하여, 예상손실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비예상손실은 자기자본으로 설정하여 운영

<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손충당금/자기자본 설정의 예



#### (4단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 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분석 및 보완, 사전 거절 규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 개인신용평가모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델 튜닝, 내부/외부 부정 행위에 대한 감사, 선진사례 연구 및 개발

□ 또한 금융회사는 성공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세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인신용평가를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에 대한 연체 및 부도에 대한 가능성을 추정하고 미래에 대한 손실분포를 추정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자율/한도가 결정되어야 함.

②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시스템**: 금융회사의 전체 리스크부담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등급체계에 따라 만들어진 비슷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개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정 리스크수준을 설정하여 관리

③ **CB 활용 시스템**: CB 등 외부정보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체계, CB가 제공하는 스코어의 활용체계 등을 구축

\* 특히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체 신용평가보다는 CB스코어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나. 현행 시스템의 평가

### 1) 개관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소규모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은 미흡한 상태
  - 신용평가모형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 신용평가모형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를 신용거절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신용평가에 따른 금리차등 적용, 신용한도 차별 등이 적극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손충당금 설정 및 적정 자기자본 산정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를 위한 리스크등급체계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대손충당금 설정 및 적정 자기자본 유지 등 리스크관리 전략수립에 활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 금융회사 자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성능을 평가·관리하고 리스크 측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을 차별화하는 활용이 결여된 상황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모니터링을 연체현황 파악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체증가 등 리스크 변화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대응방침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전략이 결여된 상황

- **외부정보 활용:** 외부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CB업계의 일천한 업력 등으로 인하여 활용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상황은 아님.
  -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외부 CB정보에 대한 유용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타 은행에서도 유용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
  - 특히 자체적인 위험관리 기능 구축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외부정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지스템 운용현황

- 외국 선진은행은 고객의 속성정보 및 행위패턴에 근거한 개인신용평가지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금리결정,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등에 활용
-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부 은행이 개인신용평가지스템(CSS)을 도입하기 시작
  - 03.9월 현재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국내은행(17개)이 개인신용평가지스템을 도입·운용
  - 개인신용평가지스템은 크게 신규대출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신청평점시스템(ASS:Application Scoring System)과 기존대출 차주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평점시스템(BSS: Behavior Scoring System)으로 구분됨
- 국내은행이 운용하는 개인신용평가지스템의 평가요소로는
  - ① 거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나타내는 고객신상정보
  - ② 기존 거래고객인 경우 자행내의 전산DB에 축적되어 있는 여수신 거래실적정보

<표 5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은행	CSS 운용 여부	CSS 개발 기법	CSS 모형 종류
조흥	○	스코어 카드 <sup>1)</sup>	ASS, BSS
우리	○	로지스틱 <sup>2)</sup>	ASS, BSS, PSS <sup>4)</sup>
제일	○	로지스틱	ASS, BSS
외환	○	스코어카드	ASS, BSS
국민	○	로지스틱	ASS, BSS
신한	○	스코어카드 (로지스틱)	ASS, BSS
한미	○	스코어카드 (로지스틱)	ASS
하나	○	하이브리드 (Decision Tree <sup>3)</sup> + 로지스틱)	ASS, BSS

- 주: 1)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는 통계적 평가모형  
 2) 주요 항목별 가중치를 배점의 형태로 전환하여 스코어카드(scorecard) 형태로 평가결과 제공하는 모형  
 3) 나무형태의 의사결정규칙을 생성하여 적용하는 기법  
 4) 사전한도부여시스템(PSS:Pre-screen Scoring System) : 수신거래,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서 대출신청이 없는 고객에 대하여 은행이 대출 한도를 미리 산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시스템

- ③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외부신용정보가 주로 활용됨

(i) 고객정보

- 일반적으로 거래신청시 작성하는 신청서류에 포함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를 통해 수집가능한 항목들로서, 직장관련항목, 연소득 및 재산상황과 주거상황 등이 주요 항목임

(ii) 자행 거래실적정보

- 기존의 여수신 거래실적과 급여이체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및 연체여부·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임.

(iii) 외부신용정보

- 신용카드, 대출, 할부금융 등의 여신거래의 보유여부를 나타내는 신용거래정보, 타사로부터의 조회횟수 및 조회사유 등을 나타내는 조회처 정보, 신용공여기간 중 발생한 불량정보, 그리고 개인채무정보 및 보증정보, 단기연체정보 등이 있음

3) 비은행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

□ 비은행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은 금융위기 이후 관심이 높아진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

- 99년 이후 금융권별 감독규정(종합금융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
- 개인신용리스크에의 노출이 큰 신용카드사와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용리스크 및 예상손실을

측정하고 있음.

□ 그러나 비은행 금융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의 개인대상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더욱 정교한 개인신용평가기법이 필요하나 규모의 영세성 및 인식부족 등으로 평가시스템 개선이 미흡

○ 금융감독원에서 03년초 실시한 비은행금융회사 리스크관리체계 점검에 따르면 자체 신용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점검대상 55개 금융회사 중 28개에 불과

<표 6> 비은행금융회사의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현황

구 분		종금	저축은행	여전사	신협	계
대상기관수		3	21	20	11	55
측정실시 기관수		3	21	20	11	55
측정방법	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3	21	20	11	55
	자체 신용평가 등에 의한 건전성 분류*	3	7	17	1	28
	Expected Credit Loss	-	1	7	1	9
	Credit VaR	-	-	5	1	6

\* 종금사의 경우 FLC, 여전사·저축은행의 경우 CSS를 포함

### 상호저축은행

□ 저축은행의 경우 일부 대형 저축은행만이 독자적인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 규모가 영세한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개발한 개인신용평가 모형 이용

\* 현재는 중앙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단기연체정보만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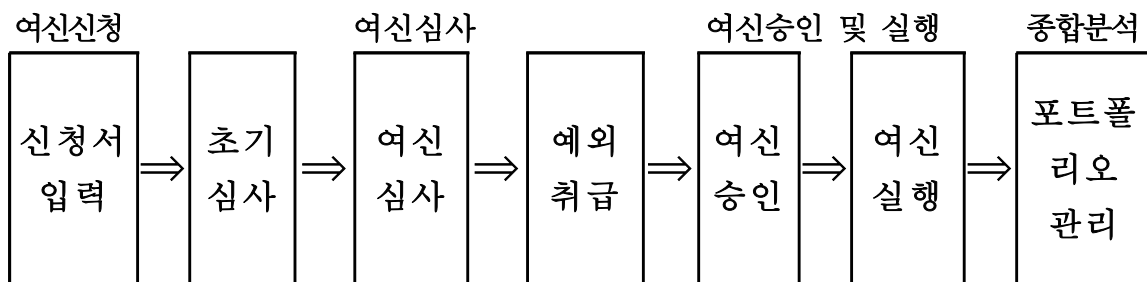
□ 일부 저축은행이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에 따르면 고객대출은 다음의 7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전산화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동 모형의 관건은 방대한 고객자료를 내장할 수 있는 고객 DB의 구축인데 동DB는 신청점수(Application Scoring)와 행동점수(Behavior Scoring)를 반영

- 사전적 고객평가정보를 나타내는 신청점수는 최초 여신신청고객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로서 직업, 개인신상정보, 신용불량여부 등을 근거로 평점 부여

- 사후적 고객평가정보를 나타내는 행동점수는 여신거래실적이 있는 고객의 신용도 변화 등을 고려 고객에 평점 부여

#### <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흐름도



○ 동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은 일정 신용점수 미만 고객은 여신공여를 자동거절하고 승인고객에 대해서는 여신한도액, 이자율, 예상손실을 계산하여 리스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신용카드회사

- 신용카드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 신용카드회사들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은 6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① (신청서 입력단계) 카드신청인의 신청서 작성전 신용불량자 등 재여부를 확인하여 카드신청인의 신청서 작성여부 판단
    - 채널별 승인율은 인터넷 20%, 모집인(설계사) 50~60%, 은행 창구 70%, 제휴업체 50~60% 정도
  - ② (1차 전산심사 단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산입력전 외부 신용정보기관(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연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카드발급 심사대상여부 결정
  - ③ (고객자격 및 신청여부 확인) 본인 여부와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발급 방지와 신청자의 리스크를 반영한 회원등급 배분에 필요한 자료의 정확성 확보
    - 미성년자 여부(단 가족카드는 만 18세 이상 가능), 신분증 확인 및 행정자치부에 진위확인, 결제능력 확인 등
  - ④ 2차 전산심사 단계(확정발급) 카드사별로 보유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스코어카드 또는 로지스틱 모형)을 활용하여 카드발급여부와 신용등급 산정
    - 카드발급여부 결정시 신상정보(직업, 성별, 연령, 결혼여부, 주거형태, 근속년수 등)와 외부신용정보(복수카드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이용

- 스코어카드 모형 이용시 평가비중은 대체로 연체기록 35~40%, 금융거래기간 15~20%, 최근 조회기록 10~15%, 금융거래패턴 20~25%, 직업/소득 20~25% 반영

\* 일부 카드사는 스코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스코어와 외부 신용평가기관(KIS, NICE)의 스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스코어 시스템을 사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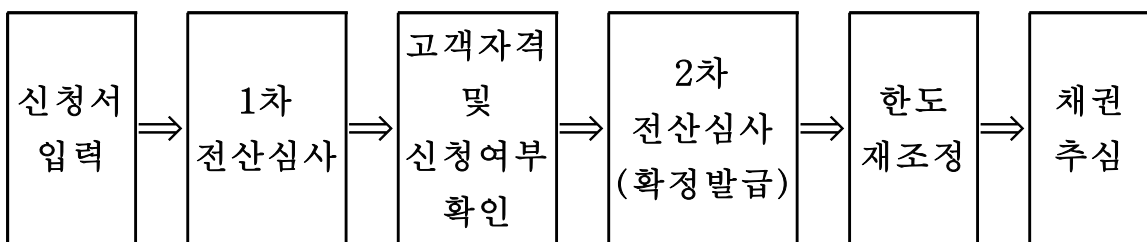
⑤ (발급 후 한도재조정 단계) 기발급된 회원의 신용도를 신용검증 기간동안 카드 이용행태에 따라 점수화하여 한도를 재조정

- 연체정보, 입금정보, 사용실적, 이용형태 등을 항목으로 반영하여 스코어를 산정

\* 내부 신용정책에 따라 카드사별로 신용검증 기간이 상이하나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사용

⑥ (채권추심 단계) 연체된 채권을 자체 운영 채권추심팀이나 외부추심기관에 위임하여 연체채권을 추심

<도> 카드사 개인신용평가 흐름도





#### 4) 감독당국의 추진현황

##### 가계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감독방안 수립·시행

- 감독당국에서는 01년 이후 급증해 온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02.2월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한 건전성감독 강화방안」을 마련·추진
  -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
  -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 건전성감독을 강화
  - 가계대출의 증가세, 연체율, 만기도래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도입(01.3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하여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의 3단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개인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상향조정(02.2/4)
  -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을 예상손실률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으로 적립토록 하는 제도적 계기 마련
  -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높여짐에 따라 사전적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유인 부여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 신용카드채권(신용판매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중 연체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02.3/4분기 결산시부터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지도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선진화를 위한 점검 및 지도

- 금융감독원은 각행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을 매년 실시
  - 동 점검과정에서 개인여신 신용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
    - \* 주요 점검항목 : 개인여신 비예상손실 산출의 적정성, 개인여신 부도율(PD) 산출을 위한 세그먼트 구분의 적정성, 신청평점시스템(ASS) 및 행동평점시스템(BSS) 적용여신의 비중, 부도시 손실률(LGD) 추정의 적정성 등
-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02.5월)
  - 일부 취약부분이 있는 은행에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지도
    - \* 주요 점검대상 :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정책, 절차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
- 비은행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계획」(99.8월)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

- 리스크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하여 인프라 구축여부 등 점검

\* 구축계획 일정

- 99년 : 중장기계획수립, 조직 및 내규정비, DB구축 및 Data 축적 시작
- 00~02년 :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Total Exposure, ALM, 신용평가, VaR, Trading 등)
- 03년 이후 : 리스크감안 자원배분, 한도관리 및 성과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리스크관리체제 운영

점검부문	주요점검내용
① 리스크관리조직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팀의 구성·운영현황
② 리스크관리내규	-리스크관리규정 및 하부규정·세칙 등 제정·시행현황
③ 리스크측정시스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 및 금리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운영현황
④ 리스크한도관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 및 금리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운영현황
⑤ 내부통제	-재무리스크 및 비재무리스크에 대한 통제방법, 책임·권한 등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능력 개선 지도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도 개인신용평가를 의무화하여 개인신용평가 적용대상 대출범위를 종전의 신용대출에서 담보대출로 확대(02.10월)

-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상황 및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BIS 리스크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02년말)
- 가계대출 부실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도(02년 하반기)
  - 각 은행에서 선진은행 모델을 참조하여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 감지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운용토록 지도

### 리스크관리 모범사례 전파

-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연합회와 공동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Workshop」을 개최(02.5월)
  - 가계대출 신용리스크관리에 대한 국내외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가계대출 관련 선진 리스크관리기법의 전파 유도
    - \* 주요 발표주제 : 개인신용평가체제 도입 및 운용현황, 조기경보체제 도입 및 운용현황, 선진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사례 등
-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확대로 연체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채권관리 및 리스크관리 기법 공유차원에서 워크숍 실시(02.3월)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발 모범사례의 발표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간 정보공유 도모

### 5) 종합평가

- 그 동안의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개인신용리스크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개인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됨

-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는 개인신용평가 단계에서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상태이며 외부정보 활용체계의 도입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도입되어 온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금융회사에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미구축)

- 기도입된 선진화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지 못함
- 대부분의 국내 금융회사는 신용평가시스템과 포트폴리오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두 시스템을 연계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관리/운용은 미흡한 상태

#### (시스템의 신축성 부족)

- 경제상황의 변화는 동일고객이라 하더라도 신뢰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은 이를 반영하는데 유연성 부족
- 현재 운용 중인 리스크체계가 시장변화에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되고 조정되어야 하나 리스크체계의 모니터링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확장위주 경영전략에 따른 시스템 운영 실패)

- 신용카드사의 경우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은 고객신용평가 기능을 위축시킴
  - 카드 발급 및 대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목표인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관심을 가짐

- 카드 발급 및 대출 승인후 한도설정에 따른 리스크, 신용에 따른 이자율 조정 등에서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수익 극대화에 치중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조회회사의 제공정보 미흡)**

□ 금융회사가 올바르게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미흡

- 은행연합회의 집중정보는 주로 불량고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대출한도, 금리 등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연체에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유함으로서 금융회사가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
  - 결국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용경색현상을 가속화
- 신용정보회사의 제공 정보도 동 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업무 관련 업력이 일천하여 정보의 축적수준이 미약하고 그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금융회사간 리스크관리 능력에 편차 존재)**

- 금융회사 신용리스크관리 수준은 금융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형금융회사의 경우는 리스크관리가 취약
  - 선진화된 신용리스크관리 적용은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형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

## 2. 개선 방안

### 가. 기본방향

-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 체계적인 리스크의 측정·관리·운영은 금융회사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함
- ◇ 신용정보기관은 신뢰성 있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유통에 대한 점검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선진화된 리스크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등 체계적인 리스크의 측정·관리·운영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업권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
  - 금융회사는 지속적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되, 시스템 구축상황, 업권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축
- 신용정보기관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
  -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공여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신용정보 유통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불량정보뿐만 아니라 우량정보까지 수집·활용하는 등 신용정보의 지속적인 확충
  - 정교한 평가모형의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을 제고
- 감독당국은 업권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진화된 리스크관리체계가 실정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운용실태 점검 등 금융회사 자체의 리스크관리체계 선진화 노력을 감독·검사측면에서 반영
  - 워크숍 개최,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체계 선진화 노력을 지원

## 나. 세부방안

### 1) 금융회사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노력 지속

-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형의 신뢰도 제고
- 수시로 모형의 유용성을 자체 점검하고 시장환경에 따라 고객 DB, 적용이자율 및 평점부여체계 변경 고려
- 자체적인 고객정보를 확충함으로써 고객 DB 등 내부신용평가정보의 유용성을 확보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체 신용평가능력 개선
- 주택관련대출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연체요인이 상이하므로



자금용도를 파악하여 신용리스크관리에 적극 활용

-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스코어링시스템(Mortgage-Scoring System)을 도입하는 등 대출승인 및 대출금리 결정체계를 개선

###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 대형 금융기관은 이미 일정 수준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동 시스템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CB 스코어 등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가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
  - 여신사후관리기능 제고를 위해 신용변동 상황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규모가 영세한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작업과 함께 CB 스코어 등 신용정보기관의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마련
  - 시스템 투자와 관련하여 비용·편익 상 외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자체적인 리스크측정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스템 공동개발 및 도입·운영을 유도
    - 고객정보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부분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 중

양회에 집적되는 것이 정확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비용절감도 가능

### 바젤Ⅱ 도입에 대비한 은행자체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각 은행은 Basel II 도입에 대비하여 Basel II의 내부등급법 (IRB:Internal Rating-based Approach)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하여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선을 지속 추진
  - 가계여신을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자산집단(Pool)으로 구분하고 그 자산집단(Pool)별로 리스크 요소(PD, LGD, EAD)를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고 : Basel II제시 소매여신 리스크관리 방법>—

- Basel II에서 가계여신의 경우 개별 차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유사한 리스크 특성을 가진 자산을 묶어 집단(pool)을 구성한 후, 그 집단(pool)별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 특성 (PD, LGD, EAD, EL)을 추정토록 함
- 이는 동일한 집단(pool)내의 익스포져들이 동질적 부도특성을 보이고 손실 또한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

### 2) 신용정보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가 올바르게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신용정보의 인프라 확충)이 주요 목적

- 신용조회회사는 공정한 CB 정보 및 스코어를 산출하여야 하며, CB 스코어는 개인 리스크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신용조회회사는 지속적인 자료의 무결성(integrity) 검증 노력을 통하여 정확한 CB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신용조회회사는 공정한 CB 스코어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프로세스(validation process)를 구축하여 결과를 공시해야 함
  - 타당성 검증 프로세스에는 (1) 가정된 모집단의 구성 (2) 접근방법 (3) 스코어별 부도율 맵핑 (Calibration) (4) 우/불량 검출능력 (Discriminant Power)이 포함되어야 함
- 신용조회회사는 CB 스코어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충분히 제공
  - CB 정보 및 스코어는 향후 개인의 불량 및 회복가능성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
  - 신용조회회사는 CB 스코어와 관련된 리스크관련 지표 (부도확률, 연체상태 등)관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시
  -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없는 경우라도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3) 감독당국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점검·지도

- 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 현황을 경영실태평가지 중점 반영토록 함

- 특히, 현재 리스크관리기구 운영이 부진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은행 등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모형에서 산출된 예상손실액의 사전추정치가 사후경험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 동 점검가이드라인을 은행 경영실태평가지 자산건전성부문 비계량평가에 활용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지도
-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의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할 MBS 기초자산의 대출승인기준으로 차주 채무상환능력 판정지표를 반영토록 추진

**모범사례 발굴·전파**

- 금융권역별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및 모범사례 개발,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선진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금융회사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관련협회 및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모범사례(best practice)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모범사례 및 workshop 개최 결과 등을 각 회사 실정에 맞게 관련내규 등에 반영토록 유도

- 리스크관리체계 구축능력이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작성 추진
  - 자율규제기관과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보수적인 수준의 준수기준으로 정착 유도

**바젤Ⅱ 시행여건 마련을 위한 지속적 지도**

- 바젤Ⅱ의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이 내부등급법(IRB) 적용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
  - 국내은행의 경우 신용리스크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일천하므로 부도율 등 리스크 특성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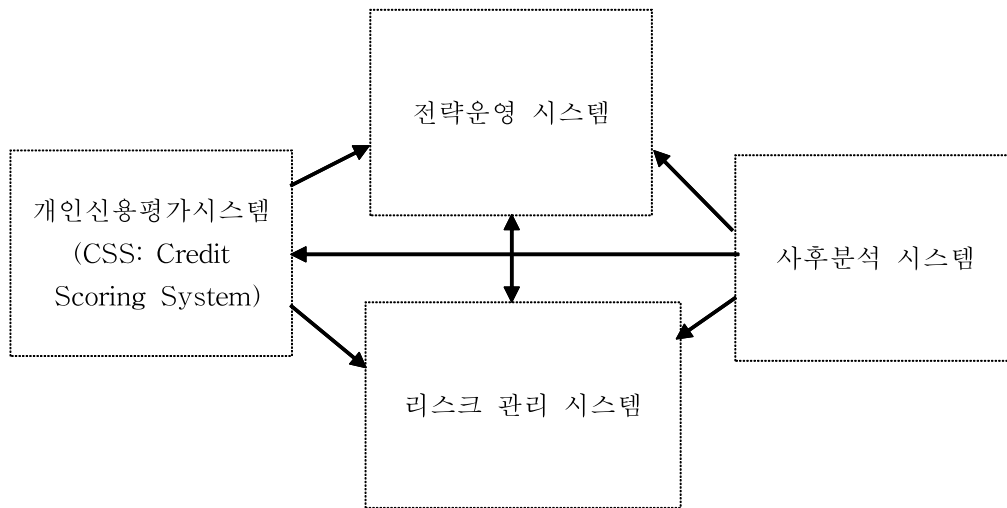
(예) 부도율 추정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관측자료 필요

- 은행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에 대한 감독점검기능(Supervisory Review Process) 강화
  - 금융감독원의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CRMS : Credit Risk Measurement System)을 본격 가동
  - 개별 은행의 신용리스크 측정값을 금융감독원의 CRMS 측정값과 비교하여 개별 은행의 리스크요소(PD, LGD, EAD)의 적정성을 점검 및 지도

## <부록 1> 바람직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 1. 리스크 관리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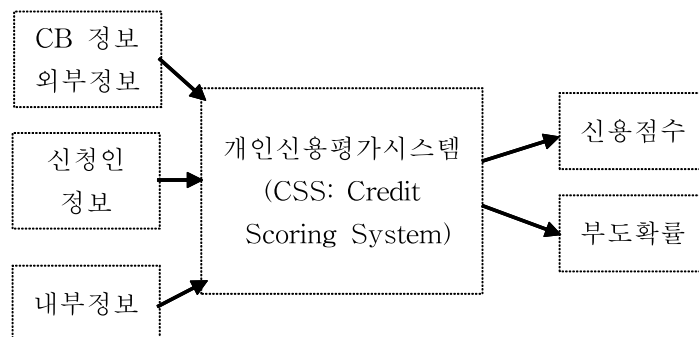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는 미래에 대한 손실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컴퍼넌트로 구성됨.



-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점검이며, 이는 ① 적절한 대손충당금 설정과 ② 충분한 자기자본의 확보를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은 개인신용에 따라 차별화되어 적용되는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임.
- 사후분석 시스템은 과거 자료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에게 ①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으며, ② 이에 따라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공.
  - 금융회사는 사후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리스크관리 시스템, 전략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 2. 개인신용평가시스템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개인의 신용능력을 평가하여 신용우량자와 신용불량자를 구분할 수 있는 변별능력이 있어야 하며, 개인별 신용점수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확률을 제공함.
  - 정확하고 다양한 개인신용에 대한 CB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에서 중요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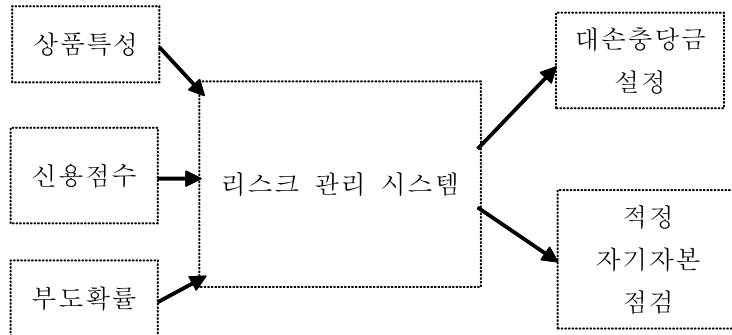


-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게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모니터링 결과를 통하여 문서 형태로 입증하여야 함.
  -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① 가정된 모집단 구성과 실제 모집단 구성의 일치성 여부 ② 접근방법론에 대한 문서화 ③ 칼리브레이션 (신용점수와 부도확률 사이의 맵핑) ④ 우/불량 변별력이 포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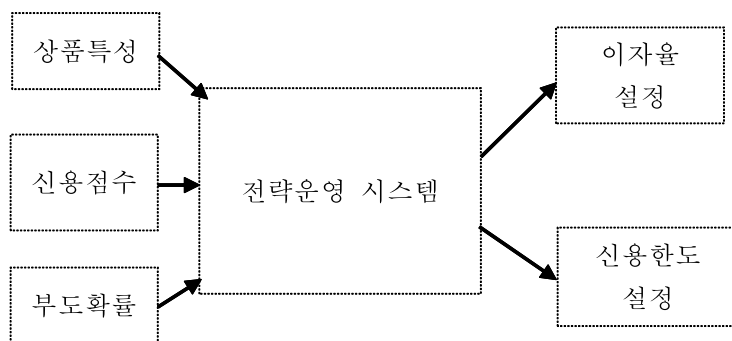
## 3.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전략운영 시스템

-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상품의 특성(예를 들어, 담보/무담보)을 고려하고, CSS에서 측정된 개인의 신용능력을 이용하여 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②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이 이러한 신

용공여를 받아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를 판단함.



-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개인 신용능력에 따라 신용한도를 설정.
  - 개인에 대한 연소득 및 가처분소득 비율, 소비자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 신용불량 상태에 임박하게 되면 신용한도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융회사는 이를 대비하여 신용한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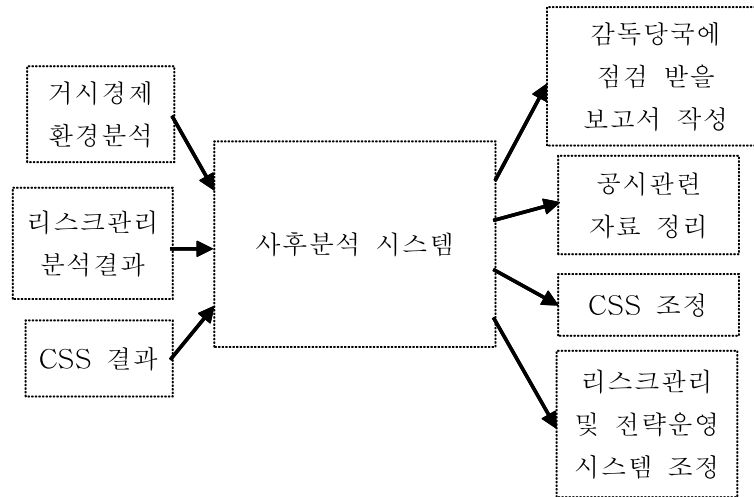


### <신용카드사의 올바른 리스크 관리>

- 담보가 없는 신용카드사의 경우는 회수율이 낮아 신용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 신용불량 상태에 임박하게 되면 신용한도를 모두 소진하게 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신용카드사는 한도 조정에 따른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 및 자기자본의 추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절장치는 카드사들의 과도한 한도 경쟁을 줄이는 역할을 함.
- 신용카드사는 현금서비스가 매우 높은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 및 자기자본의 추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함. 결국 높은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감독당국의 제한조치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낮아지게 됨.
- 감독당국의 주요 임무는 ① 신용 리스크가 올바르게 측정되고 있으며, ② 이에 따라 적절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임.

#### 4. 사후분석 시스템

- 사후분석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여 금융회사가 예측된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건전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감독당국은 사후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리스크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이나 자기자본의 확충 등을 요구하여야 함.
-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이나 자기자본의 확충이 리스크관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며, 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획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금융회사는 경제환경이 악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급상황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당국에게 점검을 받아야 함.
- 거시경제 환경분석은 경기변동 사이클,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임.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후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금융회사는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감사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별 구체적인 리스크관리 운영을 위한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 <부록 2> BASEL II 협약 개요

### 1. 개요

####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설립

- 1974년 중앙은행총재들이 모여 BCBS 발족 (참여국가: 스위스 , 미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스웨덴 , 벨기에, 캐나다 , 이태리 , 스페인 , 룩셈부르크 등)

#### □ BASEL I 협약

- 1988년 협약체결 (BCBS 주도)
-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험자산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협정 (자산종류별 리스크를 가중치로 환산하여 필요자본금 규정)
- 신용 리스크만 고려하다가 1996년에 시장 리스크를 포함시켰음
- BASEL I 협약의 주요내용: 금융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규제자본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BIS \text{ 비율} = \frac{\text{규제자본}}{\text{위험가중자산}} \geq 8\%$$

- ※ 위험가중자산에서 사용되는 위험가중치는 OECD국가의 경우 0%, 정부 20%, 모기지 50%, 나머지는 100%로 할당함.

#### □ BASEL II 협약

- BASEL I 협약은 다양한 자산별 리스크에 대하여 기준이 정밀하게 차별화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음. 따라서 BASEL위원회는 1999년6월에 1차, 2001년1월 2차, 2003년4월에 3차의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함.

- 향후일정 : 2004년 1분기에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2006년까지는 관련 Data축적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에 BASEL II 협약 발효
- 2009년 말까지 협약 최소기준들을 충족시키도록 각국의 감독기관이 내부기준을 재정립 (Transition Period)해야 하는 일정을 갖고있음

## 2. BASEL II 협약의 주요 내용

### □ 3개의 Pillar(軸)로 구성

- **Pillar 1 (최소요구자본에 대한 규정)** : 금융기관에게 ① 신용 리스크 ② 시장 리스크 ③ 운영 리스크 등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따른 적정 자기자본 유지에 대한 위험측정 방법론을 제시
- **Pillar 2 (감독당국의 역할)** : 금융기관이 적정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역할 (적정 자기자본 유지 및 내부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감독 및 검증) 제시
- **Pillar 3 (경영의 투명성 및 시장규율 준수)** : 금융활동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public disclosure)에 대한 최소 요구조건을 제시

### □ 신용 리스크 측정 방법론에서 BASEL I 방법을 기초로 하는 표준 방법 이외에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등급체계인 내부등급(IRB; Internal Rating Based)을 인정

- 표준방법 : BASEL I 협약의 내용과 동일한 방법이나 위험가중치가 더욱 세밀하게 제시됨.
- (고급)내부등급 방법: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된 부도확률(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를 이용하여 각 계정 단위의 리스크를 측정 후, 종합하여 전체 포트폴리오

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

- 궁극적으로 표준방법이나 내부등급 방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인 적정 자기자본에 대한 기준이 산출됨.